

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·어항재생시설 기부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
사업의 권역	권역
사업권역 소재지	
사업의 종류	
사업시행 확정 승인 번호 또는 고시번호와 연월일	승인번호 (고시번호) - 호[년 월 일]
사업시행자	
기부신고면적	

위 표시 기부시설 또는 토지를 「어촌·어항법」 제12조제1항·제47조의7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사업시행자)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첨부서류	1. 「어촌·어항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6호서식의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·어항재생시설 기부조서 2.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·어항재생시설 무상편입도(축척 1천분의 1) 또는 그 확정도 (부지조성의 경우에는 축척 1천분의 1, 시설물 설치의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)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----